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159

제출년월일 : 2010. 6.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관내 폐기물 처리능력의 개선과 친환경 녹색환경을 만들고자 건설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소각, 재활용선별장,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반입대상 폐기물 (안 제4조)
- 나.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및 관리 (안 제6조)
- 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수탁기관의 선정 (안 제7조)
- 라.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위탁협약 체결 (안 제8조)
- 마.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위탁기간 (안 제9조)
- 바.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위탁의 해지 (안 제10조)
- 사.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위탁운영비 (안 제11조)
- 아. 지역주민의 감시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2010년 운영위탁금 예산편성(11억)
※ 미확보 예산 약 5억여원 부족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0.5.14 ~ 6. 3) 결과 : 의견없음

-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그 밖에 시장이 운영·관리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⑤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시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3년으로 한다. 단, 위탁 계약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전문개정 2007.12.2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6]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지원협의체에 후임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전문개정 2009.6.16]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제20조(주민편의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의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

1. 관계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클린에너지파크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5. 클린에너지파크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1조(위탁운영비 등) ① 클린에너지파크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클린에너지파크 설치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가(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증가 시킨 수는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 반입량을 말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
2. 제1호에 따른 산정 결과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 [전문개정 2009.6.16]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전문개정 2009.6.16]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7.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협약의 체결 등) ①수탁기관 및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사무처리 해당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마친 때에는 위·수탁협약서의 사본을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를 접수한 기획감사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위·수탁협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단, 위·수탁자간 별도의 합의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업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위탁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체결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히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 총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1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제6조(위탁기간) ① 민간 또는 행정기관에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기관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충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과 공간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4조 내지 안 10조는 충주시와 유관기관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간정보화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주시 공간정보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3조는 공간정보 자료관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와 현업부서 간 업무를 지정하고 입력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토록하며, 파일 손상 시 즉시 복구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함 .

안 제14조 내지 제17조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관리책임자 지정,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물통합시스템 구축과 현업부서, 유관기관의 협조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8조 내지 제21조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를 근거로 하여 민원인에게 공간정보 제공과 이용절차, 발급 수수료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①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안

◆ 본 안건은 2010. 6.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1157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시관내의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4조 ~ 제10조)
- 나. 공간정보 자료관리(안 제11조 ~ 제13조)
- 다. 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안 제14조 ~ 제20조)

3.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27조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 2010. 5. 7 ~ 2010. 5. 26(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본청 및 각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0. 6. 15.(심의결과 : 원안의결)